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0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박성훈 · 서일준 · 송언석  
김은혜 · 김성원 · 조은희  
김정재 · 임이자 · 박수영  
이종욱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lt;삭 제&gt;</u></p> <p><u>제26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u></p> <p><u>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u></p>

1.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p><u>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u> <u>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경우</u></p>
--	---